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72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정지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2. 1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E생)에게,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

1) 원고는 2019. 3. 2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425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에 의해 소외회사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2019. 9. 4.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7,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9. 9. 20. 확정되었다(2019. 12. 2.경 추완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가 취하되었다).

2) 원고는 위 소제기에 앞서 2019. 2. 12.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G, H, I, J, 주식회사 K로부터 각각, 소외회사에 대하여 갖는 투자금 반환채권 내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양수금을 위 사건에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나. 소외회사의 채권 및 근저당권 취득

1) 소외회사는 위 판결 이전인 2017. 8. 25. D과, D 소유의 시흥시 L건물 제1층 M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5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금전을 대여했다(이하 소외회사의 D에 대한 채권, 즉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소외회사는 2017. 8. 29.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소외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해행위) 및 근저당권 이전

1) 소외회사를 운영하던 N, O은 위 가.항 기재 판결 이후인 2019. 10. 18.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를 확인하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 1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갑2).

2) 소외회사는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2. 23.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소외회사는 위 채권양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1. 5.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16,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

가. 피보전채권

1) 원고가 2019. 2.경 G 등으로부터 소외회사에 대한 합계 7,05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사해행위로 주장된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당시인 2019. 12. 17.경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업으로 채권을 양수하고 있는데, 대부업법 관련 규율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위반된 피보전채권 관련 채권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정의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상대방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같은 법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자율만을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 ‘등록’ 관련 내용이 그에 위반된 채권양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등록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에 수반된 채권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외회사 관련 투자 피해자들의 채권을 저가에 양수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수의 양수금 소송을 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도 같은 경위로 양수된 것이므로, 이는 변호사대리 원칙에 반하거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 15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소외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G 등은 소외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인 사실, ▲원고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위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두고 이에 기초하여 양수도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뒤 약 1개월만에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G 등의 투자금 대비 약 30~40%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G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소외회사의 운영상황과 변제자력에 비추어 임의변제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한 채권양수는, 비록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양수금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이를 때에만,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이나 변호사대리 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크기는 하나, ▲피보전채권의 양도인들은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에서 일부 피해라도 회복하기 위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들의 채권이 진정한 채권인 이상 소외회사의 입장에서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형평에 반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판결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소외회사의 채무초과 정도, O 등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갑2), 소외회사의 변제유예 요청 경위(갑4),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하면서 그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그 시가를 초과하는 액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처분으로 인해 책임재산 부족 또한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위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인데, 그 채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위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됨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소외회사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대표였던 P이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었고, 이후 피고가 P의 뒤를 이어 채권자 대표로서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받은 것이며, 피고가 채권자 대표가 되기 전에 작성해 준 갑 2호증은 이 사건 채권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2018. 7. 5. P이 투자자 대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투자금 회수의 담보를 위하여 P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고, P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어 P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한편 원고도 소외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이었는데, 2019년경부터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는 P을 대신하여 투자자 대표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채권을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20. 2.경 채권자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알리면서 경매배당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지글을 인터넷 모임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자들의 대표로 나서게 된 경위, 피고가 소외회사와 작성한 확인서(갑2)의 내용, 피고의 형사고소 취하 경위(갑7)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수익자 지위에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별지

목록(채권의 표시)

시흥시 L건물 제1층 M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7. 8. 29.
접수 제58673호로 설정등기 된 근저당권[순위번호 13번, 채권최고액 34,500,000원, 채무자 D(E
생),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피담보채권. 끝.

1) 근저당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성에 관한 주장인데, 이후 청구가 변경되어 근저당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